

戰時체제(1937~1945)하의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대한 연구

이 진 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A Study on the Westernization of Japanese Costume During War (1937~1945)

Jin-Min Le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3. 11. 27 투고)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japanese national suit, women's standard dress, and mompe, which were used as a means of controlling people's life and simplifying people's clothing during the chinese-japanese war(1937) and the pacific war(1941-1945). National suit was a semi-military uniform for men and it was the western style suit composed of jacket, under shirt, and pants. National suit was not popular during the early war, but it became popular afterward. Women's standard dress had the two kinds of styles: the kimono and the western style. Women's standard dress was not popularly distributed. Instead, many japanese women wore mompe, the active wear of standard dress. Almost all of japanese women wore mompe by the end of war because of its practical use. The effects of national suit, standard dress, and mompe on the rapid westernization of postwar japanese cloth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ational suit and standard dress contributed to the official acceptance of the western clothes as japanese daily clothes. Second, national suit, standard dress, and mompe changed the traditional view of japanese on clothing and caused the rapid westernization of japanese clothing with the high emphasis on the practical and functional use of clothing. Especially, as japanese women wore mompe as the outer garment, mompe affected the view of japanese on women's body and it served as an important stimulus to speed the westernization of japanese women's clothing.

Key words: Japanese costume(일본복식), national suit(국민복), standard dress(표준복),
mompe(몹ape), Westernization(양장화)

I. 서 론

메이지(明治) 유신(1867) 이후 각부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일본의 문명개화 노력은 복식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개화 초기 상류층의 예복으로 처음 도입되었던 양복은 남성의 군복에 이어 예복이나 제복 등 주로 공적인 의복으로 제도속에 채용되었다. 일본 여성의 양복 역시 19세기 중엽 서양 문화가 유입될 당시 로쿠메이칸(鹿鳴館) 시대¹⁾의 예복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개화 초기 양장은 남녀 모두에게 있어 극히 제한된 상류층만을 위한 것이었다. 명치(明治)시대에 들어온 서양의 문화가 일반 대중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대정(大正) 시대(1912~1926)와 소화(昭和)시대(1926~1989)에 이르러서이다. 이 시기에 이르러 남성복에는 양복이 어느 정도 보급되었는데, 남성들은 외출복과 출퇴근복으로 양복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양복은 대정시대 중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직업여성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보급이 시작된 정도였으며, 소화 시대 초기에 이르러서도 양복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논제였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이 촉발시킨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1945)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전쟁으로 인한 국가 비상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모든 것이 전쟁 위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으며, 국민들의 일상 생활 전반은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 당시의 군국주의 풍조는 복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국민 정신의 고취, 보다 효율적인 경제적 통제 및 군비 확보를 목적으로 전시 체제하의 새로운 국민 의복을 제정, 발표하였는데 남성을 위한 국민복(國民服)과 여성을 위한 부인표준복(婦人標準服)이 그것이었다. 특히, 이 시기는 근대 이후 일본 복식의 양장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기가 되었던 시점으로, 전쟁 전과 전쟁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쟁 후의 일본 복식이 본격적인 양장화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²⁾ 즉, 양장의 보급이 시작되긴 하였으나 아직 양장화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던 전쟁 전과 본격적인 양장의 시대가 도래했던 전쟁 후라는 시간 사이에 국민복과 표준복

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복식의 양장화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차용희(1973)³⁾의 일본 근대복식 고찰, 장양이(1977)⁴⁾의 개화기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식변천 고찰, 박미애(1994)⁵⁾의 개화기 일본 의복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는 주로 일본의 개화기인 명치(明治)시대에 한정된 것으로, 개화기 이후 양장의 보급과 일반화의 과정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않다. 남윤숙(1992)⁶⁾과 이경미(1999)⁷⁾는 한, 일 두 나라의 개화과정을 중심으로 복식변천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였는데, 남윤숙(1992)은 한, 일 여성복의 양장화를 중심으로, 이경미(1999)는 한국과 일본의 복식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나 이들 역시 양장화의 초기단계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황정윤(2002)⁸⁾은 명치시대부터 대정(大正), 소화(昭和)초기를 거쳐 태평양 전쟁 시기까지 일본 여성복의 양장화 과정을 고찰하였는데, 그 범위가 여성복에 한정되고 있으며 전시 체제 의복에 관한 상세한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일본 복식에서 본격적인 양장화의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세기 중반기 일본 전시 체제(1937~1945) 하의 복식생활과 당시 제안되었던 국민복과 표준복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쟁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중심으로, 당시 국민 생활 통제와 의복 간소화의 일환으로 제안되었던 국민복과 부인표준복(이하, 표준복으로 표기)을 대상으로 하여, 국민복과 표준복의 제정 및 각각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고 그 보급과 착용 양상을 고찰하며, 이들 복식이 전후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표준복의 한 복종(服種)이었으면서 표준복 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보급률을 보이며 유행했던 여성들의 ‘몸빼’에 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몸빼는 전쟁 이전 시기 아직 미진했던 여성 복식의 양장화에 있어 ‘바지의 착용’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의복으로 이후 여성복식의 양장화에서 갖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어 표준복과 더불어 상세히 고찰하였다.

20세기 중반, 전시체제(1937~1945) 하의 일본의 복식은 일본 의복 역사를 통해 볼 때 본격적인 양장

화의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즉, 이 시기(1937~1945) 일본에서 제안되었던 의복인 국민복과 표준복을 통해 당시의 복식 생활을 살펴보는 것은 일본 복식의 양장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며, 전쟁 전과 전쟁 후라는 연속적인 역사적 맥락의 관점에서 양장화의 흐름과 방향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 시기 일본 복식의 변화는 개항이후 서양과 동양이라는 문명 충돌에 이어 다시 한일합방(1910)을 통해 서양화된 일본과 조선이라는 구도 속에 복합적인 서양화의 과정을 거쳤던 한국 복식의 양장화 과정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의 시기는 한국 식민 역사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가 극에 달하였던 시기로, 이는 한국 복식에도 직접적인 통제와 영향으로 나타났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 복식에 대한 고찰은 향후 한국 복식의 양장화 연구에 있어 비교자료로서의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국민복과 표준복을 제정하게 된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국민복과 표준복, 그리고 몸뻬의 형태적 특징 및 각각의 제정, 보급, 착용양상에 대해 고찰하며, 셋째, 국민복과 표준복, 몸뻬가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이후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일본 근현대사 관련 문헌 및 관련 선행 연구와 일본 복식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당시의 사진자료 및 신문자료를 검토, 참고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 문화적 배경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시기는 1937년~1945년에 이르는 시기로, 이 때는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이라는 두 전쟁을 치르며 국가적 비상사태에 놓였던 시기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심은 러일전쟁(1904-1905)과 대한제국 병합(1910) 이후 또다시 관동군을 편성하여 만주사변(1931)을 일으켰고, 뒤이어 소화 12년(1937) 베이징 교외 지역에서 군사행동을 일으킴으로서 중일전쟁이 시작되었다. 중일전쟁은 만주사변과는 비교가 안되는 본격적인 전쟁이었으며, 이후 7년간 계속되었다. 그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군인의 대규모 소집이 행해져 청년기의 남자들이 속속 전쟁에 동원되었고, 방대한 군수 물자의 조달을 위해 국내의 모든 부분에서 경제통제가 강행되었다. 소화 13년(1938) 의회에서는 국가총동원법이 제출되었는데, 국가총동원법은 전시통제법 규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한번의 칙령으로 노동, 물자, 자금, 시설 등의 경제분야를 비롯하여 국민생활의 모든 부분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승인하는 법률이었다.⁹⁾ 이후, 소화 15년(1940) 일본 내각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구상을 발표하고, 동남아시아를 침략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시화 하였다. 그해 9월에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세 나라의 삼국동맹이 체결되었고, 이들은 영국과 미국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섭 추진을 계속하였는데, 미국은 오히려 경제봉쇄를 단행하며 일본을 압박하였고, 이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¹⁰⁾ 태평양 전쟁 개전 후 국내경제체제는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모든 부문에 걸쳐 통제망이 실시되었다. 전쟁경제는 국민생활을 파괴하였고, 소화 17년(1942)부터는 식량, 의류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생활필수품의 배급제가 실시되었다. 생활필수물자 중에서도 가장 일찍 바닥이 난 것은 의료품(衣料品)이었는데,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던 섬유제품은 중일전쟁 개시 직후부터 부족하여 1940년에는 메리야스, 수건, 양말 등이 표제(票制)가 되었고, 1942년에는 전면적인 의료표제가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의료표에 의한 배급제는 1년에 80점 혹은 100점의 의료표를 배급함으로써 의료의 구입을 점수제로 제한한 것이었다. 또한 일본은 당시 한국에 대하여,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내선일체론에 의거해 황국신민(皇國臣民)을 강요하고,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하게 하였으며 조선의 노동력과 생산물을 착취하는 등 막바지 식민 통치의

극한을 보여주었다.

1945년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지역의 전쟁이 끝나 게 됨에 따라 일본은 세계 50여개국을 상대로 고립 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결국, 소화 20년(1945) 8월 6 일 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되고, 뒤이어 나가사끼에 도 원폭이 투하됨에 따라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일본은 그해 8월 15일 포츠담선언을 받아들였고, 9월 2 일 미합 미주리호의 선상에서 정식 항복 조인이 이 루어짐으로써 태평양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¹¹⁾

2. 복식사적 배경

일본은 19세기 후반 국내 정치 기반의 확립을 바탕으로 메이지(明治) 유신(1867)을 통한 개화를 시작하여, 명치(明治)시대(1867~1912)와 대정(大正)시대(1912~1926)를 거쳐 소화(昭和)시대(1926~1989) 초에 이르는 시기까지 아시아의 새로운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며 국제적으로 강한 경계와 반발을 사고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된 문명 개화운동을 통해 서양의 문화가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일본 복식에도 양복이 도입, 양장화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개화 초기의 양장은 극히 제한된 상류계층 만을 위한 것이었으며 남성의 군복과 관복, 여성의 예복을 중심으로 양장화가 진행되었다. 대정(大正)시대에 일어난 관동대지진(1923)을 계기로 생활 양식의 서양화가 추진됨에 따라 양장의 보급이 일시적으로 촉발되었으나, 중일전쟁 발발 직전인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양복은 남성 위주의 외출복이나 공식적인 예복으로 주로 착용되었고, 평상시, 가정에서의 차림은 남녀 모두 여전히 화복(和服)¹²⁾이 일반적이었다. 대정 말부터 소화초기에 걸쳐서는 모던걸이나 모던보이가 화제를 모았다. 당시 모던걸, 모던보이는 서구사회의 소비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었는데, 잡지나 영화와 같은 소비문화사회의 상징적 이미지이기도 하였다. 특히, 1920년대 모던걸의 이미지는 아직 까지 기모노 차림을 고수하던 대다수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모던 걸의 활동적인 이미지가 일부 여성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대정(大正) 말기와 소화(昭和) 초기의 남성들은 출퇴근복으로 양복을 입는 것

이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당시 도시에서는 양복을 입고 중절모를 쓴 샐러리맨들이 많이 보였다. 같은 시기 여성의 복식에 대해서는, 명치 41년(1909) 창간된 아래 진보적인 편집 방향으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던 부인잡지『婦人之友』의 소화 12년(1937) 6 월호에 실린 '전국 19개 도시 여성 복장 조사 보고'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기사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당시 일본 여성의 1/4 정도가 양복을 착용하고 있고, 그 1/4 중 반 이상은 제복을 착용한 것이며, 나머지는 아가씨와 직업여성이라는 것이었다.¹³⁾ 즉, 그때까지도 여성복의 양장화는 초기 단계에 머물렀으며, 직업 여성이나 학생 등 일부 여성들에게만 양복 착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화(昭和) 초기 이후 일본은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일으킴으로 전시체제로 돌입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상황의 악화와 함께 의료(衣料)의 부족으로 멋을 내기 위한 '패션'은 제한되었으며, 갱생복(更生服)과 같은 비상시의 의복이 장려되는 전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소화 13년(1938),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고, 총동원체제하인 소화 15년(1940)에 남성을 위한 국민복이 제정되었으며, 뒤이어 17년(1942) 여성의 표준복이 제정됨으로써 전시 체제 하의 복식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 되었다.

III. 국민복, 표준복, 몸빼의 형태적 특성 및 착용 양상

1. 국민복(國民服)

1) 제정 및 형태적 특성

소화 13년(1938) 시작된 총동원체제 하에서 군인 이외의 모든 남자 국민이 모든 장소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던 옷을 국민복이라 한다. 소화 15년(1940) 제정된 국민복은 국민의 정신 고양, 의복 생활의 합리화 및 군민(軍民) 피복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0년 11월 1일 천황칙령 제725호로서 공포 즉시 시행된 국민복령(國民服令)은 모두 6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 2 조에 '종래 남자들이 양복

을 착용하거나, 양복을 평상복으로 착용하는 경우에 이를 국민복으로 대체하여 착용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⁴⁾

그러나 칙령 전반을 살펴볼 때, 착용의 의무에 대해 강제하는 조항은 보이지 않는다. 국민복령은 기본 조항 외에 별도의 조항을 부가하여 국민복의 형태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당시 발표된 국민복은 갑호, 을호의 2종류였는데, 각각 상의(上衣), 중의(中衣), 바지(袴)로 되어있으며, 모자(帽), 외투(外套), 신발 등에 대한 조항이 덧붙여져 있었다.¹⁵⁾ <그림 1> 국민복은 '상의', '중의'와 같은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풍을 의식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일면으로 중의에는 기모노 깃을 달기도 하였다. 이는 국민복이 비록 외적으로는 양복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그 내면과 외면의 일부에 '일본적인 것', 즉 화복(和服)적인 요소를 배치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음으로써 '일본인의 의복'이라는 명분을 놓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복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서민 남성들로 하여금 국민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민복령은 국민복의 착용을 강제하는 의무적인 법령은 아니었으며, 다만 국민복이란 무엇인가를 가리킨 것에 지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국민복을 군용으로 이용한다는 등의 군복과 관련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민복은 준 군복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소화 15년(1940) 국민복.
左로부터 갑호·을호·갑호 예복.
(概說日本服飾史, p. 125)



<그림 2> 1940년 1월 東京日日新聞에
게재된 국민복. 당시 4종이던 것이
국민복령 제정 시 2종으로 통합되었다.
(洋服と日本人, p. 83)

국민복은 본래 그것의 제정 1년 전, '총동원복'을 만들려던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국민복령 제정 1년 전인 1939년 발표되었던 '총동원복 모집광고 응모요강'은 국민복 제정의 모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총동원복 응모요강의 첫번째 조항인 '가'항에는 '최소한 손을 보아 바로 군복으로 할 수 있고, 그것을 착용해서 전쟁에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군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항에는 '일본 고유 복장의 특징을 살리면서 독자적이고 진보적일 것'이라고 하여, 군사적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먼 규정도 볼 수 있다. 이어 '마'항에는 '보건적이고 경제적인 것일 것'이라는 조건을 명시하였다.¹⁶⁾ 즉, 총동원복은 준 군복으로서의 목적 이외에도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본적 특색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군복이라는 실질적 필요의 충족과 함께 국민들의 정신적인 면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명분을 동시에 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동원복에 대한 제정 계획은 추상적인 형태만 제시된 채 무산되었고, 이후 1년만에 전쟁으로 인한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군사색이 좀 더 진해진

국민복으로 제안되었던 것이다.

무산되었던 총동원복의 아이디어는 육군의 주도 하에 국민복으로 이어졌는데, 국민복령이 발표될 당시에는 일본 육군성(陸軍省)과 후생성(厚生省)이 주체가 되었다. 국민복의 형태는 육군성과 후생성의 지원 하에 동경일일신문에 주최한 공모전에서 모집된 아이디어를 중요 참고안으로 하여 제정되었다.<그림 2> 칙령이 발표되기 전, 1차적으로 제안된 국민복은 본래 1~4호까지 4종류였다. 4종류 모두 겉옷인 상의(上衣), 상의안에 받쳐입는 중의(中衣), 바지의 3종으로 구성되었고, 모자와 외투를 필요에 따라 착용하였으며, 카키색, 즉 국방색의 사지(サジ)를 소재로 하였다. 4종류였던 국민복은 1940년 11월, 국민복령이 시행됨과 동시에 2종류로 통합되었다. 이 단계에서 공모전에서 결정된 1호 상의와 중의를 맞추어 '갑호'로 하였고, 4호의 상의와 3호의 중의를 맞추어 '을호'로 지정하였으며, 공식적인 예복으로도 국민복을 착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국민복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지게 되었고, 그에 따른 획일성으로 인해 준 군복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확실해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2) 보급 및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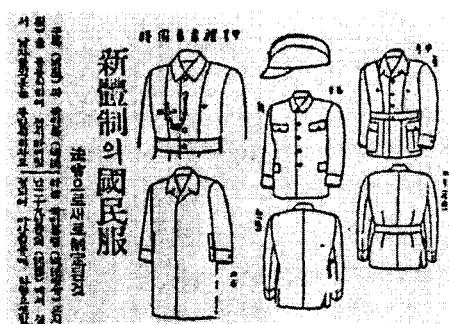
정부는 국민복의 보급을 위해 1940년 8월 '대일본 국민복협회'를 설립하였고, 그와 동시에 『국민복』이라는 잡지를 발행하여 국민복을 지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민복령 발표 이후에도 국민복에 대한 특별한 강제조치가 없었으므로 국민복의 보급은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국민복을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는데, '갑호'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의회에서 나왔고, 결국 1943년 6월 발표된 '전시 의생활 간소화 요항'을 통해 국민복 '을호'만을 착용하도록 지시되었다. 이는 국민복의 착용을 보다 강제하는 의미와 함께 국민복의 준 군복화를 완성한다는 의미를 갖는 조치였다. 이어 1943년 6월 15일에 칙령 제499호로 '국민복제식특례(國民服制式特例)'가 발표되었다.¹⁷⁾ 여기에서는 반바지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다갈색, 검정색, 진한 곤색, 백색 등의 다양한 색을 허용하였다. 이를 보면 국민복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진 듯 보이나.

상의는 여전히 국방색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라는 의미가 담겨있었다. 국민복이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연상되는 ゲ-トル(脚絆)의 규정은 여기서 처음으로 법령화되었다.

이후, 전쟁상황이 더욱 급박해지면서 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 전반으로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1944년에는 의례복으로서의 요소를 상실한, 완전한 방공복으로서의 군복형 국민복의 보급이 시행되었고, 전쟁 말기에는 거의 모든 남성들이 국민복을 착용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시기에 국민복은 명실공히 국민의 제복이 되었으며, 정부가 의도했던 준 군복화가 비로소 달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림 3> 국민복 광고
(洋服と日本人 p. 129)



<그림 4> 한국신문에 실린 국민복 - '신체제의 국민복' 매일신보, 1940년 11월 2일자
(우리생활100년 옷. p. 104)

2. 표준복(標準服)

1) 제정 및 형태적 특성

총동원체제하의 여성들에게는 남성들의 국민복을 보완한 것으로서 '부인표준복'이 제안되었다. 후생성 주도로 '부인 표준복'을 제정한 것은 국민복 제정 2년 후인 소화 17년(1942)이었다. 제정된 표준복에는 갑형, 을형 및 활동의가 있었는데, 갑은 양복식, 을은 화복(和服)식 이었다. 갑형과 을형은 각각 원피스식인 1부식과 투피스식인 2부식이 있었으며, 을형의 1부식만을 제외하고 각각 1호와 2호가 있었기 때문에 갑, 을형을 합해 모두 7종류로 되어있었다. 또한, 각각에 맞추어 바지형의 하의를 입는 것을 활동의로 하고 있다. 발표된 표준복은 양복식인 경우에도 깃은 기모노 것으로 하고 우임으로 입는 것이었으며<그림 5>, 화복식은 기모노의 넓은 소매를 좁게 만들으로써 여유분을 없애 자원의 절약을 도모하였고, 상하 2부식으로 활동하기 좋게 변형하였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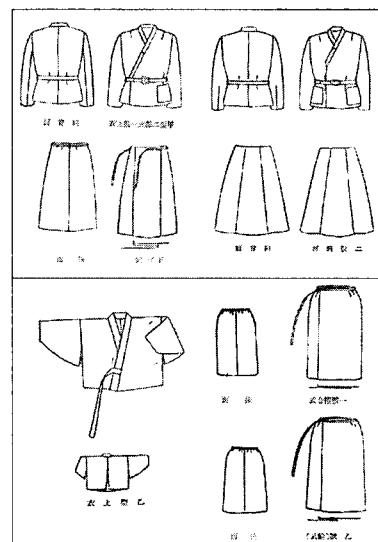
표준복은 국민복과 달리 군복적인 요소는 거의 없었다. 표준복의 제도로서의 특징은 법률로서 제정되었던 국민복과 달리 후생성 차관급 회의의 양해사항이었던 '부인표준복 제정에 관한 건'¹⁸⁾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차관회의의 양해사항은 국민복령 보다 더 추상적인 것이었으며, 따라서 표준복을 착용하는 여성은 거의 없었다. 당시 정부는 여성을 위한 새롭고 특별한 의복을 제정하는데 있어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원의 낭비라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었으므로, '피복자원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옷감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지 상관없다는 입장은 갖고 있었다. 즉, 국민복이 일상복의 준 군복화를 의도했던 데 비해 표준복은 옷감의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민복과 표준복을 통해 정부는 의료(衣料)의 생산이나 소비 통제에 있어서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의도하였던 것이다.

2) 보급 및 착용

본래 표준복의 제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반대의 견도 있었고, 양복형과 화복(和服)형 중 어느 형태로 할 것인지에 관해 결론이 나지 않아 상당히 어중간



<그림 5> 소화 17년(1942)
제정된 부인표준복 (左:갑형/양복식,
右:을형/화복(和服)식)
(洋服と日本人. p. 57)



<그림 6> 부인표준복
(위:갑형 2부식 아래:을형 2부식)
(日本服飾史要. p. 270, 271, 273, 274)

한 형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7종류로 나뉘진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는 표준복의 제정 이후 의류업에 관계하던 사람들, 특히 직접적으로 양재(洋裁)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사이에서 표준복의 다양한 용용형을 논의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복과 달리 표준복에서는 용용형이 장려되었고, 여러 미디어에서 다양한 디자인이 발표되었다. 용용형

표준복은 본래의 표준복과 상당히 다른 형태로도 만들어졌는데, 이는 표준복의 제정의도가 의복 차원의 절약이라는 측면이 강했으므로 새로운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입지 않는 옷을 고쳐 입는 방향으로 보급이 진행되었던 것이라 하겠다.

법률로서 규정하지도 않았고, 의복 차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응용형이 장려되었던 당시의 상황들은 표준복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주요 원인이기도 하였다. 표준복은 본격적인 전시체제 들어가면서, 국민복과 마찬가지로 1943년 6월의 ‘전시 의생활 간소화 요령’에서 그 착용이 다시 한번 지시되었는데, 이후 정부 차원에서 기관지를 발행하고 강습회를 개최하는 등 표준복의 보급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복은 보급되지 않았으며 표준복을 착용하는 여성들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여성들은 전쟁이 급박해짐에 따라 공습에 대비하여 활동성이 요구되었으므로 치마 형태의 표준복 대신 바지 형태의 몸빼로 점차 갈아입게 되었다. 이후에 고찰하고자 하는 몸빼는 본래 표준복의 활동의(活動衣)로 지정되었던 것인데, 방공연습 등을 통해 그 유용함을 알게 된 여성들이 표준복을 입지 않고 몸빼로 평상복을 대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표준복의 보급은 더욱 저조해지는 결과를 냥게 되었다.

3. 몸빼(もんべ)

1) 제정 및 형태적 특성

몸빼는 전시체제하에서 부인표준복의 한 복종(服種)인 활동의로서 제안되었던 것인데, 표준복의 보급이 미미했던 데 비해 월등히 높은 보급률을 보이며 전쟁 말기 거의 모든 여성에게 착용되었던 옷이다.

<그림 7>

몸빼는 표준복이 제정될 당시 새로 만들어진 의복은 아니었다. 몸빼는 에도(江戸)시대(1603~1868)부터 일본의 농촌에서 노동복으로서 착용되었던 바지의 일종으로, 전체적으로 여유분이 있으면서 바지단으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는 형태이다. 몸빼의 기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米澤發祥이라는 지방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한다. 몸빼의 표기는 ‘門閉’, ‘紋平’, ‘紋閉’ 등 소리나는 대로 한자로 표기하거나, 히라가나로

‘もんべ’, ‘もんべい’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몸빼’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데, 아이누(アイヌ)語의 ‘うんべ’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門兵(문지기)이 착용했던 옷’¹⁹⁾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다. 또한, 몸빼 스타일의 바지를 ‘裁附’, ‘雪袴’, ‘股しゃれ’, ‘かるさん’ 등으로 불렀다고도 한다.²⁰⁾

몸빼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노동복으로 존재해왔던 의복으로 총동원체제하에 이르러 표준복의 활동의로 도입되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몸빼의 활용에 있어서 큰 변용을 거치게 되었다. 본래 표준복의 활동의로 제안된 몸빼는 서양복의 바지에 가까운 구성이었으나, 실제로 보급되었던 몸빼는 직선 재단의 상당히 여유분이 많은 몸빼였다. 또한, 표준복의 활동의로 발표된 몸빼는 표준복의 상의와 함께 입는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몸빼였으나, 실제로 보급된 몸빼는 일본 기모노와도 입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림 7> 부인표준복의 활동의로서의 몸빼
(日本服飾史要. p. 278)

<그림 8>
같은소재의
화복(和服)형
상의와 몸빼
(洋服と日本人.
p. 219)

2) 보급 및 착용

몸빼는 공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국민복과 마찬가지로 보급률이 낮았는데, 공습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매우 빠르게 보급되어, 전쟁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민복이나 표준복의 보급률을 월등히 앞서면서 전시체제하의 여성 의복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전시체

제하의 일본 여성복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모습은 치마 형태의 표준복을 착용한 여성아 아니라 바지형의 몸빼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인 것은 몸빼의 높은 보급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몸빼의 이러한 보급률을 볼 때, 몸빼 착용이 모든 여성들에게 강제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몸빼는 그 보급과정에서 국민복이나 표준복처럼 획일적 형태의 보급이 도모된 것도 아니었고 착용이 강제된 것은 더욱 아니었다. 몸빼에는 화복(和服)형의 상의나 서양식 블라우스를 자유롭게 반쳐입었으며, 몸빼의 소재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국방색이 아닌 화복(和服)용 옷감이나 양장용 옷감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그림 8>

표준복이 실질적으로 거의 보급되지 않았던 것은 이미 언급하였으나, 표준복을 대신해 여성들에게 입혀졌던 몸빼도 처음부터 보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심지어 초기에는 몸빼 착용에 대한 악평도 있었다. 1943년 『衣服研究』에는 몸빼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을 담은 글이 게재되었다.²¹⁾ 그것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었는데, 여성의 다리가 드러나는 형태인 몸빼는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며, 그것은 방공이나 공습 때만 입어야 할 옷이라는 의견과, 한편으론 몸빼의 보온성과 활동성 때문에 그것을 입지 않을 수 없다는 두 가지 견해가 실려 있다. 바지 형태였던 몸빼는 기모노를 착용하는 전통적인 일본 여성의 이미지와는 달리 여성의 활동적인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일상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었으므로 몸빼를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위화감을 조성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몸빼의 형태가 입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에게 미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이미지도 주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빼가 보급되었던 이유는, 본격적인 전시체제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 국가에서 항상 국방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몸빼는 일본 여성복식에서 바지가 갖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동시에 그 활동성과 기능적인 면에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공존하였던 것인데, 전쟁 상황이 급박해짐에 따라 몸빼의 긍정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됨으로써 폭발

적인 유행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인다. 몸빼의 유행은 몸빼를 보는 시각에도 변화를 가져왔는데, 전쟁말기인 1944년 『衣服研究』에 ‘몸빼 예찬’이라는 글이 게재되었다.²²⁾ 이 글을 쓴 사람은 유명 화가였는데, 글의 제목 그대로 농사를 지을 때나, 그림을 그릴 때나, 외출할 때나 몸빼가 너무 좋다는 것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다. 그는 또한, 몸빼가 미적으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입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예쁘게 착용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비록 한 개인의 글이긴 하지만 공적인 출판물에 이러한 글이 실렸던 것으로 보아 몸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몸빼가 가진 실용성은 전시체제하의 여성들로 하여금 바지를 걸옷으로 착용하게 하는 변화를 가져왔고, 여성들은 몸빼를 착용함으로써 활동성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전후 일본 여성 복식이 본격적으로 양장화되는데 있어 기본적인 시각의 변화를 제공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V. 국민복, 표준복, 몸빼가 일본복식의 양장화에 미친 영향

1. 평상복으로서의 양복 채용

전시체제하의 국민복과 표준복은 당시 화복(和服)과 양복 사이를 오가던 일본인의 복식 생활에 평상복으로서의 양복을 제안함으로써 전후 일본 복식에서 양복을 일반적으로 착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총동원체제가 시작되기 직전인昭和초기만 하더라도, 일본 복식에서 양복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착용되었으며, 여성들은 일부에서만 양복을 착용하기 시작한 상태였다. 양복이 어느정도 보급되었던 시기라고 하지만 양복은 제복이나 교복, 출퇴근복 등 외출복이나 공적인 복장이 주가 되었으며, 가정에서의 평상시 의복은 화복(和服) 차림이 일반적이었고, 여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 하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상시 의복으로

국민복과 표준복을 제정했던 것은 전시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평상복으로서의 양복 착용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국민복은 상의, 중의, 바지로 구성된 수트 형식의 양복이었다. 국민복의 경우, 국민복령 발표(1940) 이전 본래 4가지로 제안되었던 것이 국민복령 시행 이후 2가지 형태로 축소되었고, 이어 1943년 '국민복제식특례(國民服制式特例)'에서 여름옷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원래 1~4호까지 제정되었던 국민복은 올호 1가지로 집약되었으며, 일본적인 성격이 가미되었던 중의(中衣)는 거의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 제정 당시 디자인 쪽으로 상당히 노력했다는 갑호는 착용하지 않게 되었고, 일본적인 디자인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완전히 상실되었다. 결국, 군민(軍民) 피복의 접근을 목표로 남성 의복의 준 군복화를 의도했던 국민복은 활동적, 실용적 성격을 내포한 '양복'이라는 수단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부 특수 계층이 아닌 일반 남성들이 평상시에도 양복을 착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표준복의 경우에는 그것을 기모노형으로 할 것인지, 양복형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표준복은 양복형과 기모노형을 모두 채택하여 7종류로 분화, 제정되었는데, 이는 남성복에 비해 여성복의 양장화 수준이 아직 미비한 단계였으므로 양복형을 채용하되 기모노형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준복에 관한 그러한 논의 중에는 여성들이 겉옷 안에 입는 내의류의 문제도 있었다. 기모노와 양복은 속옷부터 달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모노형의 표준복을 착용할 경우에도 내의는 모두 서양복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치했다는 것이다. 표준복이 발표되었을 당시 내의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시되었는데,²³⁾ 서양식 내의류가 권장된 이유 중 하나는 보건 위생적인 측면 때문이었다. 당시 정부가 권장 이유로 내세운 것은 '민족 증강' 이었는데, 이는 서양식 내의류가 여성의 출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다. 기모노의 착용은 복부를 압박할 뿐 아니라, 기모노 안에 속옷을 전혀 입지 않으므로 하체가 추위 여성의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이 그 배경이었다. 표준복에서 서양식 내의류의 착용이 실제로 얼마만큼 일반화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 이후 일본의 여성복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양장화 되었던 것을 볼 때, 적어도 서양식의 내의류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은 표준복 착용 당시부터 상당히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전후 여성들이 일상복으로서의 양복 착용을 일반화하는데 있어 보다 빠른 수용을 가능케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 기능성을 중시하는 실용적 복식관(服飾觀)의 대두

양복은 '감춤의 미학'으로 이어져 오던 일본의 전통적인 복식관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쟁으로 인해 대두된 복식의 활동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복, 표준복, 몸빼를 통해 가시화되었다.

국민복이나 몸빼가 갑자기 보급된 직접적인 원인은 '공습'이었지만, 그것은 공습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공습이 있을 때는 활동적인 신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복을 입어야 한다는 개념의 공유가 있었으므로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는 여성 의복에서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났는데, 몸빼의 폭발적인 보급은 기능성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복식관이 반영된 결과였으며, 이는 전후 일본 복식의 본격적인 양장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비록 전시체제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국가의 권장이 있긴 하였으나, 복식에 대한 변화된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여성 스스로의 선택이 없었다면 몸빼의 유행은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즉, 여성들은 자신들이 쳐한 '전쟁'이라는 외부적 상황 앞에서 전통적인 화복(和服)이나 치마 형태의 표준복이 아닌 보다 활동적인 의복인 몸빼를 선택함으로써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하였고, 이는 그 이전과는 달라진 복식관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총동원체제가 시작되기 전인 대정(大正, 1912~1926) 시대와 소화(昭和) 시대 초기에 일반인들이 양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외국 영화나 잡지를 통해서였다. 당시에는 양복을 착용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였는데, 그것은 '양복'이라는 이름 그대로 그것이 일본의 것이 아니었므로 일본인,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양복의 착용은 비윤리적인 행동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하였다.²⁴⁾

1920년대 등장했던 '모던걸'은 그러한 점에서 대다수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였다. 당시 모던걸에는 서구사회의 소비적인 이미지가 담겨있었는데, 잡지나 영화와 같은 소비 문화 사회의 상징적 이미지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론 모던걸이 가진 활동적인 이미지가 일부 여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이후 총동원체제 하의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필요이자 욕구의 대상으로 작용하였다. 전시체제 하의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요구되어 온 신체의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활동적이고 기능적인 신체적 존재로서 요구되고 있었다. 기모노로 대변되었던 일본 여성의 아름다움이란 원래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1930~40년대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은 여성을 집안에만 머무를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에 따라 전시(戰時)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여성의 의복에 대한 기대는 활동적, 기능적인 의복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시체제하에서 기능성을 중시하는 실용적인 복식관이 대두했던 것은 그 이전까지의 여성복에서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던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몸빼는 기능적인 면을 위로 한 의복 선택의 결과였으며, 오랫동안 여성복에서 속옷으로만 착용되던 바지형의 의복을 겉옷으로 착용하는 것을 가능케 했던 획기적인 변화였다.

남성의 경우는 전쟁 전 이미 양복이 어느 정도 보급된 상태였으므로 여성의 경우 만큼 큰 변화로 다가오진 않았으나, 전쟁 초기 미진하던 국민복의 착용이 전쟁 말기로 접어듬에 따라 점차 확산되었고, 국민복의 형태에 있어서도 シ-トル(脚絆)의 착용이 증가했던 것 등으로 보아 남성 복식에서도 역시 기능적, 실용적인 면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3. 몸빼를 통한 여성 신체에 대한 시각의 변화

총동원체제는 여러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선동하고자 하였지만, 총동원체제하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것보다 실질적인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은 확실하다. 국민복이나 표준복은 정신성을 가시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행된 것이긴 하지만, 그 실현과정에서 나타난 것은 정신성의 변형이

아니라 신체 그 자체의 변용이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노동자 혹은 군인임을 요구하는 체제는 노동자나 군인적 신체를 요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신체레벨에서 균질화된 평등사회를 강요하려는 체제이기도 했다. 이러한 요구는 여성에게 있어 더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특히 몸빼 착용을 통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냈다.

몸빼의 착용은 전통적인 개념의 일반 여성들에게 노동자로서의 신체를 요구하는 것이었던 동시에 남성과 동등한 활동적 신체에 대한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들은 전쟁 중의 몸빼 착용을 통해 '국가를 위해 노동하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고, 이는 전쟁이 끝난 후에는 '가족을 위해 노동하는 여성'의 상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남성과 동등한 활동적 신체성의 획득은 몸빼가 바지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앤 홀랜더(Aanne Hollander)는 여성복식에 있어서 바지의 보급에 대해 '여성의 상반신과 하반신이 필연적으로 연동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폭로'라고 언급한 바 있다.²⁵⁾ 서양의 폐미니즘 운동은 부루머(A. J. Bloomer) 여사를 비롯하여 여성의 팔다리를 보여주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바지 형태의 몸빼는 전통적인 일본 여성의 이미지와는 달리 여성도 남성과 같이 활동적인 신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복을 통해 일상적으로 명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몸빼 착용 초기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나 직접 착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즉, 몸빼의 착용을 통해 '여성의 하반신과 상반신이 필연적으로 연동하고 있다는 사실의 폭로'를 달성해버린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다름 없는 신체가 요구되었음을 가시화한 것이었으며, 이는 전쟁 이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신체성을 획득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몸빼를 통해 여성들은 '입는 것'을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가벼운 신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즉, 그전까지는 옷의 형식을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았으며 표준복에도 그러한 측면이 나타났었는데, 본격적으로 몸빼로 바꾸고 난 후에는 화복(和

服)에서 양복으로 의복을 바꾸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모노와 양복 사이에서 고민하던 여성들로 하여금 전쟁이 끝난 후 양장을 일상복으로 받아들이는데 매우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전후 일본 복식 양장화를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일본의 제국주의적 세계관이 촉발시킨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1945)은 국가적 비상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을 형성하였고, 일상 생활 전반은 물론 복식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통제를 가져왔다. 당시의 군국주의 풍조는 총동원체제 하에서 국민복, 표준복이라는 의복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는 복식의 유니폼 시대를 의도한 정부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국민복은 1940년 국민복령의 공포와 동시에 착용이 시행되었는데, 일본적, 보건적,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준 군복과 같은 옷이었으며, 양복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국민복 제정 2년후 발표된 부인 표준복은 전시체제하의 여성을 위한 의복으로, 국민복과 달리 군복적인 요소는 거의 없었다. 국민복과 표준복은 그것이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거의 보급되지 않았으나 전쟁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보다 강제적인 시행이 명령되어 국민복의 경우는 전쟁 말기에 이르러 높은 착용율을 보였다. 그러나 표준복의 경우는 국민복 보다 좀더 자유로운 경향이 강하였고 다양한 디자인의 응용 또한 행해졌으므로, 실제로 지정된 표준복을 착용하는 여성은 별로 없었다. 대신, 표준복의 한 복종(服種)으로 지정되었던 몸빼가 폭발적인 보급률을 보이며 유행하였다. 몸빼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의 노동복으로 존재하였던 것인데, 그 활동성으로 인해 전쟁시 여성들의 상징적인 의복이 되었다. 몸빼의 보급에는 여성들의 선택이라는 단순한 강제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며, 다양한 소재와 착용 방법을 통해 패션의 침체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전시체제 하에서 유행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패전의 결과로 정치적, 경

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당시 일본의 의복 상태는 전쟁전의 여러 가지 노력(생활개선 운동, 생생의 복의 권장 등)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했던 국민복과 표준복은 전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입혀지지도 않았으며, 잊혀져 갔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복, 표준복, 몸빼를 일본 복식이 양장화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단절된 시기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²⁶⁾ 그러나 그것은 국민복과 표준복을 전쟁기의 유니폼으로만 생각했던 것으로 이는 단절사관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전쟁 전부터 전후로 이어지는 일본 역사의 연속적인 맥락에서 총동원체제를 끼워넣어 전쟁 전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역사학의 관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복과 표준복을 양장화의 단절로 보는 것은 매우 단편화된 시각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것은 전쟁 전과 전쟁 후를 잇는 매개체로서 전후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진다.

전후의 일본 복식은 본격적인 양장화가 진행되어, 양복은 일본의 도시지역만이 아닌 농촌지방에까지 상당히 보급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전쟁 이전 상류층과 남성, 직업 여성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했던 양장화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다. 남성 복식에 있어서는 명치(明治)시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 온 양장화 과정에 있어, 국민복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전시체제를 이끌었던 군국주의가 하나의 단층 역할을 하면서 전쟁 이후 남성의 복식이 완전히 서양화되어 외출복, 평상복 및 일상적인 패션으로서 남성 양복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이전, 양장화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던 여성복식에 있어서도 군국주의의 영향은 전쟁이후 본격적인 양장화를 이끌어 낸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는 평상복으로서 양복을 도입했던 표준복과 기능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실용적인 복식관의 대두, 여성의 새로운 신체성을 이끌어낸 몸빼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복과 표준복, 그리고 몸빼는 전쟁 전이라는 어두운 시대의 마지막과 전후라는 밝은 시대의 시작의 의복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의복의 제정 의도가 비록 국민 통제와 괴롭 자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했던 당시의 군국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착용은 '선택'의 결과였으며, 전시체제 하의 이들 의복이 전후 일본 복식의 양장화에 미친 영향을 간과 할 순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로쿠메이칸(鹿鳴館) 시대는 歐化主義시대로 明治17, 18년부터 20년에 걸친 시기(1884-1887)로 명치 정부가 조약 개정을 위해 유럽화를 적극 추진한 시기이다. 鹿鳴館이란 명칭은 日比谷에 있던 外交場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이경미 (1999). 19세기 개항이후 韓·日 服飾制度 비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7-48)
- 2) 小池三枝, 野口ひろみ, 吉村佳子 (2000). 概說日本服飾史. 東京: 光生館, pp. 128-132.
- 3) 차용희 (1973). 일본 근대복식에 대한 고찰(前). 전주교 대논문집, 제8집, pp. 265-279.
- 4) 장양이 (1977). 개화기의 우리나라와 일본의 복식변천 고찰.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박미애 (1994). 개화기 일본 의복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남윤숙 (1992). 한일 여성복의 양장화에 관한 비교연구. 服飾, 제5권 제19호.
- 7) 이경미. 앞의 책.
- 8) 황정윤 (2002). 일본 여성복식의 양장화에 관한 고찰.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遠山茂樹, 藤原彰, 今井清一, 박영주 역 (1988). 일본현대사. 한울, pp. 142-143.
- 10) 황정윤. 앞의 책, p. 8.
- 11) 황인영 (1995). 일본사여행. 일본문화연구센터, pp. 276-278.
- 12) 和服(和服)은 양복(洋服)에 대응하여 기존의 일본복식을 지칭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이다.(이경미. 앞의 책, p. 1)
- 13) 小池三枝, 野口ひろみ, 吉村佳子. 앞의 책, p. 121.
- 14) 江馬務 (1956). 日本服飾史要. 京都: 星野書店, p. 263 : 國民服令 - <第一條>大日本帝國男子ノ國民服(以下國民服ト称ス)ノ制式ハ別表第一ニ依ル、<第二條>國民服ハ從來背廣服其ノ他ノ平常服ヲ著用シタル場合ニ善用スルヲ例トス、<第三條>國民服礼装ハ國民服ヲ著用シ國民服礼章ヲ佩ブルモノトス、國民服礼章ノ制式ハ別表第二ニ依ル、<第四條>國民服礼装ハ從來燕尾服、フロツコート、モニグコート其ノ他之二相当スル礼服ヲ著用シタル場合ニ善用スルヲ例トス、<第五條>國民服礼装ニハ佩用ニ關スル規程ヒ勸章、記章及褒章ヲ佩用スルコトヲ得、<第六條>本令ノ制式ニ依ラザル服又ハ飾章ハ其ノ名称中ニ國民服又ハ國民服儀礼章ノ文字ヲ用フルコトヲ得ズ。附則 - 本令ハ公布ノ日ヨリ之ヲ施行ス。
- 15) 江馬務. 위의 책, pp. 263-269.
- 16) 井上雅人 (2001). 洋服と日本人. 東京: 廣濟堂出版, p. 255.
- 17) 井上雅人. 위의 책, pp. 256-257 : 國民服制式特例 - <第一條>當分ノ内國民服ノ上衣及袴ノ地質ハ適宜トス但シ礼装ノ場合ニ於テハ茶褐色、黑色、濃紺色又ハ白色(白色ハ暑熱ノ時期又ハ地方ニ於ケル場合ニ限ル)トス礼装ノ場合ニ於ケル外套ニ付亦別同表ジ、<第二條>當分ノ内黒革長靴ハ雨雪又ハ乗馬ノトキ以外ノトキト雖モ礼装ノ場合ニ於テ之ヲ用フルコトヲ得、<第三條>當分ノ内國民服ニ脚絆ヲ用フルコトヲ得、脚絆ノ地質ハ適宜トス但シ礼装ノ場合ニ於テハ茶褐色、黑色又ハ濃紺色トス、<第四條>當分ノ内國民服ノ袴ハ長靴又ハ脚絆ヲ用フル場合ニ限り別表制式ノ短袴ト爲スコトヲ得、<第五條>國民服令第六條ノ規定ノ適用ニ付テハ本令ニ依ル服ハ之ヲ國民服令ノ制式ニ依ルモノト看做ス。
- 18) 井上雅人. 위의 책, pp. 257-258 : 婦人標準服制定に関する件 - 一、標準服は日本婦人の服装たるに相応相応しく日本の性格を表現する以て其の根本理念とすること。二、標準服は質実簡素を旨とし容儀を正しく眞の女性美發揮せしむる如く之を考案すること。三、標準服は民族增强の要請に応じ婦人の保健上最善のものたらしむる如く之考案すること。四、標準服は婦人の活動分野増大の動向に鑑み、其の活動能率上最善のものたらしむる如く之考案すること。五、標準服は現下の纖維事情に鑑み、退蔵衣類の更生活用、衣料の節約其の他經濟上最適のものたらしむる如く之を考案すること。六、標準服は國民生活の實情に鑑み仕位上自家裁縫主義を徹底せしむる如く之を考案すること。七、標準服は婦人服装の特殊性に稽へ之を制服的に一定することを避け、前各項の原則に準據する限り其の部分的應用工夫を認むること。
- 19) '門兵'을 일본어로 읽으면 もんべい가 된다.
- 20) 木村松吉 (1930). もんべに關する研究. 被服, 제1권, 제3호.
- 21) 飯野爲三 (1943). もんべとはんてん. 衣服研究, 제3권, 제1호, p. 45.
- 22) 三岸節子 (1944). もんべ礼讚. 衣服研究, 제23호, p. 23.
- 23) 江馬務. 앞의 책, p. 276.
- 24) 井上雅人. 앞의 책, p. 160.
- 25) Anne Hollander (1994). *Sex and suits*. New York: Knopf, p. 146.
- 26) 上野千鶴子 (1998). ナショナリズムとジェンダ. 東京: 青土社, p. 16.